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54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5462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611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도

변론종결 2023. 3. 16.

판결선고 2023. 4. 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611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20.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3,473,8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갑 1 내지 12호증” 다음에 “을 6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부터 제11행의 “아니한다”까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8. 20. B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510819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B이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화해권고결정이 2020. 12.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가 B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와 B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범, 판사 이형석, 판사 장지혜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용인시 수지구 O에 있는 P아파트 Q동

[도로명주소 : 용인시 수지구 R]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S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84.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용인시 수지구 O 대 7,392㎡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7,392분의 32.38. 끝.

